

##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------	------	------

신청인	①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성명	④ 전화번호
	⑤ 본점소재지	

⑥ 사업연도	년	월	일부터
	년	월	일까지

### 1. 배당가능이익

⑦ 당기순이익	⑧ 유가증권 평가이익	⑨ 유가증권 평가손실	⑩ 이월이익 잉여금	⑪ 이월결손금	⑫ 이익준비금	⑬ 배당가능이익 (⑦-⑧+⑨+⑩-⑪-⑫)

### 2.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

⑭ 배당가능이익의 90% (⑬×90%)	⑮ 실제배당액	⑯ 소득공제 해당여부 (⑭ ≤ ⑮)	⑰ 소득공제 이월금액	⑱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(공제한도)	⑲ 소득공제액 MIN(⑮+⑰, ⑱)

### 3. 소득공제액의 이월

⑳ 사업 연도	요공제금액		당기 공제대상금액							㉑ 배당비율 미달에 따른 미공제액	㉒ 공제 금액 (㉑-㉒)	㉓ 소멸	㉔ 이월 금액 (㉑+㉒ -㉓-㉔)
	㉑ 당기분	㉒ 이월분	㉓ 당기분	㉔ 1차연도	㉕ 2차연도	㉖ 3차연도	㉗ 4차연도	㉘ 5차연도	㉙ 계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2제8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### 작성 방법

1. ⑰소득공제 이월금액란에는 ⑳이월분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2. ㉑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.
3. ㉒당기분란에는 ⑰소득공제 해당여부가 '여'인 경우에만 ⑰실제배당액을 적습니다.
4. ㉓이월분란에는 ㉑사업연도별로 전기의 ㉓이월금액을 적습니다.
5. ㉔당기분란에는 당기분 금액을 적고, ㉒란~㉔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㉓이월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6. ㉕배당비율 미달에 따른 미공제액란에는 ⑰소득공제 해당여부가 '부'인 경우 ㉔계 금액을 적습니다.
7.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않으며,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하고,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합니다.